

발급번호: 0507-2161

# 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『축산법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5년 03월 31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: 충북지원  
성명: 정혜인



신청인	성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 042-824-8135		
도축장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5년 03월 28일
	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 043-535-3412		

(단위: 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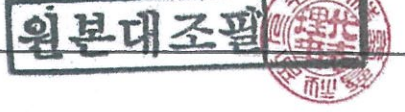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70020501254( 1 )	1+	170020501254( 22 )	1+	170020501254( 46 )	1
170020501254( 2 )	1+	170020501254( 24 )	1+	170020501254( 48 )	1
170020501254( 4 )	1+	170020501254( 27 )	1	170020501254( 50 )	1
170020501254( 7 )	1	170020501254( 28 )	1	170020501254( 53 )	1
170020501254( 8 )	1+	170020501254( 29 )	1	170020501254( 54 )	1+
170020501254( 9 )	1+	170020501254( 30 )	1	170020501254( 55 )	1+
170020501254( 10 )	1+	170020501254( 31 )	1	170020501254( 56 )	1
170020501254( 11 )	1+	170020501254( 32 )	1+	170020501254( 57 )	1
170020501254( 12 )	1+	170020501254( 33 )	1	170020501254( 59 )	1+
170020501254( 13 )	1	170020501254( 34 )	1+	170020501254( 61 )	1
170020501254( 14 )	1	170020501254( 36 )	1	170020501254( 62 )	1
170020501254( 17 )	1	170020501254( 38 )	1+	170020501254( 63 )	1+
170020501254( 18 )	1+	170020501254( 39 )	1+	170020501254( 64 )	1+
170020501254( 20 )	1+	170020501254( 42 )	1+	170020501254( 65 )	1
170020501254( 21 )	1	170020501254( 45 )	1+	170020501254( 67 )	1+
전체:	45두 ( 1+ 등급: 24	1 등급: 21	2 등급: 0	등의등급: 0	)



발급횟수: 1건 발행일자: 2025-03-31 11:58:13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 
 ※ 내용내역은 『축산법 시행규칙』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  
 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  
 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 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]



계 충북10-20250328-0011-0 호

# 도축검사증명서

- 가축의 종류: 돼지
-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: 84 (170020501254)
- 중량: 지육 6957 kg, 내장 등 기타 1176 kg
- 작업장명: (주)팜스코
- 검인번호: 충북10
- 도축일: 2025년 03월 28일
- 도축의뢰인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남욱 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: [ ]여, [ O]부

### 9. 수입소의 경우

-수출 국가명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: 폐기( 35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 0 kg)

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03월 28일

검사관 소속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 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명: 황일하 (서명)

(수의사 면허번호: 7100 )

